

# 독일의 전자신분증 제도

정보신청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주민과

## I. 서론

2008년 12월 18일에 독일 의회는 새로운 전자신분증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0년 11월 1일부터 전자신분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롭게 시행된 전자신분증은 소위 ‘문서세상(Papierwelt)’에서 전자세상으로까지 신분증의 사용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전자신분증은 전자정부와 전자상거래의 두 가지 영역에서 기능하게 된다.<sup>1)</sup> 전자신분증은 기존의 신분증에 관한 법<sup>2)</sup>을 개정한 신분증 및 전자신원증명에 관한 법<sup>3)</sup>(이하 ‘신분증법’이라 칭함)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신분증 및 전자신원증명의 실행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신분증 및 전자신원증명에

관한 법규명령<sup>4)</sup>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신분증 및 신원증명 수수료에 관한 법규명령<sup>5)</sup>에서 규정하고 있다.

## II. 신분증 및 전자신원증명에 관한 법제

### 1. 일반규정

#### 1) 신분증에 대한 의무와 권리

신분증법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독일 기본법 제1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독일인은 만 16세가 되어 일반적인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자 및 그러한 신고의무 없이 주로 독일에 거주하는 자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신분증 소유자는 권한 있는 관청이 신원확인을



1) Bender/ Kügler/ Margraf/ Naumann, DuD 2010, 296.

2) Gesetz über Personalausweis.

3) Gesetz über Personalausweise und den elektronischen Identitätsnachweis.

4) Verordnung über Personalausweise und den elektronischen Identitätsnachweis.

5) Verordnung über Gebühren für Personalausweise und den elektronischen Identitätsnachweis.

## 맞춤형 법제정보

위해 필요로 하는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제1조 제1항 제2문). 신분증 소유자는 신분증을 맡기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구류상태에 놓일 것일 요구받아서는 안된다(제1조 제1항 제3문). 그러나 이는 정당한 권한 있는 관청이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내지는 추징이나 압류를 위한 경우에는 준용하지 않는다(제1조 제1항 제4문).

### 2) 신분증에 저장되는 정보

신분증에는 신분증을 발급한 관청, 발급일, 유효기간, 접근번호<sup>6)</sup>가 저장된다(제5조 제2항). 또한 성명, 박사학위, 출생년월일, 출생지, 사진, 주민등록번호의 서명, 신장, 눈의 색깔, 주소, 국적, 카드의 일련번호,<sup>7)</sup> 소속교단에서의 이름 내지는 예명이 저장된다(제5조 제2항 각호). 그 밖에 신분증에는 신분을 확인할 때에 기계로 판독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신분증임을 의미하는 ‘IDD’ 내지는 ‘ITD’<sup>8)</sup> 표시, 성명, 일련번호, 독일 국적표시인 ‘D’, 생년월일, 신분증의 유효일, 바코드번호

와 공백으로 구성되며 신분증에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표시된다. 신분증에는 전자저장매체와 전자가공매체가 함께 삽입되며,<sup>9)</sup> 여기에는 성명, 박사학위, 생년월일, 출생지, 사진, 주소, 교단에서의 이름 내지는 예명과 기계로 판독되는 부분, 지문날인, 어떤 손가락으로 지문을 날인하였는지 여부, 지문날인의 상태에 대한 내용이 저장된다(제5조 제5항 각호). 신분증에 저장되는 정보 중 특히 지문은 신분증 신청자가 별도로 신청한 경우에만 신분증에 저장되며, 이 경우 오른쪽과 왼쪽의 집게손가락의 지문날인이 저장된다(제5조 제9항 제1문 내지 제2문). 집게손가락이 없거나 지문날인의 상태가 좋지 않거나, 손가락 끝이 손상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엄지, 중지, 약지의 날인이 저장된다(제5조 제9항 제3문). 그러나 일시적이지 않은 의학적인 이유로 지문날인이 불가능하다면 지문날인을 저장하여서는 안된다(제5조 제9항 제4문). 전자저장매체와 전자가공매체에 저장된 정보는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 신원확인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제5조 제10항).



- 6) 신분증법 제2조 제11항에서 개념정의하고 있는 접근번호(Zugangsnummer)란 임의로 부여된 6개의 숫자로 신분증과 신분증판독기 간의 통신에 있어서 편한 없는 접근을 예방하기 위한 번호이다.
- 7) 신분증법 제2조 제8항에서 개념정의하고 있는 일련번호(Seriennummer)는 4자리의 관청번호와 5자리의 임의로 부여된 숫자로 이루어지며, 숫자와 알파벳을 혼용할 수 있다.
- 8) 독일연방공화국의 임시신분증임을 의미한다(제5조 제4항 제1호 b목).
- 9) 전자신분증에 삽입되는 Chip 카드가 이에 해당하며, 이하 문맥에 따라 ‘전자저장매체 및 전자가공매체’와 ‘칩카드’라는 용어로 같이 사용하기로 한다.

### 3) 신분증의 유효기간

신분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제6조 제1항),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제6조 제5항). 또한 여권법(Passgesetz) 제7조에 의하여 해당 관청은 신분증소유자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고, 출국금지 여부는 경찰서의 출입국관리대상에 저장된다(제6조 제8항).

### 4) 관할

독일 내에서 신분증에 관한 사무는 각 주가 정한 신분증관청(제7조 제1항), 특히 신청자 혹은 신분증 소유자의 집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신분증 관청이 담당한다(제8조 제1항 제1문). 신청자가 집이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의 해당 관청이 당해 업무를 담당한다(제8조 제1항 제2문). 외국에서의 신분증에 관한 사무는 독일 외무성과 외무성이 특정한 위임기관이 담당하며(제7조 제1항 내지 제2항), 특히 신청자나 신분증 소유자가 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기관이 이에 담당한다(제8조 제2항 제1문). 이때 외국에서 신청자가 주로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 가에 대한 증명을 신청자 본인이 해야 한다(제8조 제2항 제2문). 신분증 발급신청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장소적으로 관할이 아닌 기관에서도 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권한

이 있는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업무를 위임받아야 한다(제8조 제4항).

## 2. 신분증의 발급과 정지

1) 전자신원증명 기능의 배제, 첨가, 차단, 해제  
신분증 신청자는 신분증을 교부받을 때에 신분증관청에 대해 문서로 전자신원증명을 사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며, 이러한 의사표시는 신분증의 유효기간 내에 언제든지 문서로 변경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 전자신원증명이 배제된 신분증은 신분증의 유효기간 내에는 전자신원증명이 첨가될 수 있으나,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고 이때 본인은 신청시를 기준으로 만 16세에 이르러야 하며, 기존의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제10조 제3항 제1문). 또한 전자신원증명이 첨가되어 있는 신분증의 경우에도 신분증의 유효기간 동안에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러한 기능이 배제될 수 있다(제10조 제3항 제2문).

차단리스트운영자<sup>10)</sup>는 모든 서비스제공자에게 산출된, 최근의 리스트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 리스트에는 전자신원증명을 첨가하고 있는 분실된 신분증의 차단징표<sup>11)</sup>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서비스제공자는 언제든지 공개적으



10) 신분증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내무성 장관이 차단리스트운영자를 지정한다.

11) 신분증법 제2조 제7항에 의하면 차단징표(Sperrmerkmale)란 서비스별, 카드별 일련번호로, 서비스제공자가 분실된 신분증을 인식하는 데 사용된다.

## 맞춤형 법제정보

로 연결되는 통신망을 경유하여 이 리스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제10조 제4항 제1문). 서비스제공자는 차단징표를 위하여 산출된 차단리스트를 정기적으로 불러내고, 전자신원증명의 범위에서 제시된 신분증과 차단리스트를 일치시켜야 한다(제10조 제4항 제2문).

신분증발급청이 전자신원증명이 포함된 신분증의 분실이나 신분증소유자의 사망을 알게 된 경우에 해당 관청은 차단리스트의 실행을 위하여 신분증의 차단암호<sup>12)</sup>를 차단리스트 운영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제10조 제5항). 신분증소유자는 전자신원증명이 포함된 신분증을 분실하였거나 신분증이 없어진 경우에 제7항 제4조 제2문에 의하여 차단리스트 운영자에게 차단암호를 알려서, 즉시 전자신원증명을 기능을 잠가야 하며, 이때에도 제27조 제1항 제3문에 의한 신분증관청의 신분증 분실에 대한 통지의무는 유지된다(제10조 제6항). 전자신원증명이 첨가된 신분증의 분실에 대해 신분증관청이나 신분증소유자는 언제든지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제10조 제7항). 신분증분실신고의 경우 신고 당시 경찰청이나 신분증관청으로부터 문서로 증명을 받아야 하고, 경찰청이나 신분증관청은 그러한 사실을 신분증발급기관에 알려

야 한다(제10조 제9항).

신분증관청의 통지나 신분증소유자의 신고로 기능이 잠긴 신분증의 경우 신분증 소유자가 직접 출석하거나, 그의 법정 대리인이나 임의대리인이 출석하여 신고된 신분증을 제시하면서(제10조 제8항 및 제9조 제1항 제6문) 신분증 습득을 신고하는 경우에 한해 신분증 관청은 차단리스트운영자에게 당해 신분증에 대한 차단을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제10조 제8항).

### 2) 정보제공의무

신분증소유자가 전자저장매체와 저장가공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중 읽을 수 있는 정보<sup>13)</sup>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신분증관청은 이러한 열람을 보장하여야 한다(제11조 제1항). 신분증소유자가 정보열람을 신청할 때에 신분증관청은 신청자에게 전자신원증명에 대한 정보서류를 교부하여, 신분증에 전자신원증명기능을 첨가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표시(제11조 제2항 및 제10조 제1항)를 준비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제11조 제2항). 또한 신분증관청은 신청자에게 전자신원증명의 사용에 있어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요구되는 조치에 대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제11조 제3항), 신청자는



12) 신분증법 제2조 제6항에 의하면 차단암호(Sperrkennwert)는 전자신원증명이 첨가된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에 신분증의 기능을 잠그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호를 의미한다.

13) 읽을 수 있는 정보란 동법 제5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신분증이라는 표시, 성명, 일련번호, 독일국적표시, 생년월일, 유효기간을 의미한다.

이상의 통지를 문서로 확인하여야 한다(제11조 제4항).

신분증관청이 신분증의 분실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분증관청은 관할 신분증관청, 신분증교부청, 경찰청에 그러한 사실을 자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제11조 제5항 제1문), 경찰청이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찰청은 관할 신분증관청과 신분증교부청에 분실사실을 자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제11조 제5항 제2문). 분실통지에는 이름, 일련번호, 신분증발급기관, 발급날짜, 신분증의 유효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제11조 제5항 제3문). 그 밖에 지역상 관할이 아닌 신분증관청이 관할 신분증관청으로부터 위임받아 신분증을 발급할 경우(제8조 제4항), 신분증을 발급한 관청에서 본래의 관할 신분증 관청에 신분증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출생지, 신분증발급기관, 발급날짜, 신분증의 유효기간 및 일련번호를 통지하여야 한다(제8조 제6항). 신분증관청이 신분증의 전자신원증명을 배제하거나 첨가하는 경우, 신분증관청은 자체 없이 신분증발급기관에 그러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제11조 제7항).

### 3) 정보수집, 정보심사, 정보전달의 절차와 방식

신분증관청이 신분증제작을 위하여 신분증

제작자에게 전달하는 정보는 중개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하며(제12조 제1항 제1문), 정보의 중개는 중개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다(제12조 제1항 제2문). 정보전달 및 정보중개가 이루어지는 장소에는 각각 정보보호, 특히 정보의 신뢰성과 완전성, 정보를 전달하는 장소의 확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상의 안전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제12조 제1항 제3문). 소셜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술상황에 적합한 암호화절차가 적용되어야 한다(제12조 제1항 제4문). 그 밖에 지문과 사진의 수집, 보존 및 신분증정보의 전달을 위하여 신분증관청은 신분증제작자에게 특정한 기술시스템과 장비를 지정하여야 하며(제12조 제2항 제1문),<sup>14)</sup> 연방정보기술안전청은 이러한 지정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제12조 제2항 제2문).

#### 4) 차단암호, 해제번호, 비밀번호의 전달

신분증제작자는 전자신원증명의 사용, 차단, 차단해제를 위하여 신분증의 비밀번호, 해제번호, 차단암호를 전송하여야 하며(제13조 제1항 제1문), 이 중 비밀번호는 다른 서류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용지로 전달하여야 한다(제13조 제1항 제2문). 다만, 신분증신청자가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에 한해 비밀번호, 해제번



14) 이때 신분증제작자에게 요구되는 기술시스템과 장비의 기준에 관하여는 신분증 및 전자신원증명에 관한 법규명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 맞춤형 법제정보

호, 차단암호의 전달은 신분증교부청으로 보낼 수 있으며(제13조 제1항 제2문), 이때 신분증관청은 신분증소유자에게 이러한 절차의 위험성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제13조 제1항 제4문). 비밀번호, 해제번호, 차단암호가 신분증교부청으로 보내진 경우에도 당해 서류에 대한 권한은 신분증소유자에게 인정된다(제13조 제1항 제3문).

### 3. 개인정보와의 관계

#### 1) 개인정보의 사용과 조사

신분증에 저장되어 있거나 신분증을 사용하여 확보하는 개인정보는 신분증법 제14조 내지 제17조에 의하여 권한 있는 기관의 신원확인을 위한 경우와 동법 제18조 내지 제20조에 의하여 공공부문 및 비공공부문에서만 사용되거나 조사될 수 있다(제14조).

#### 2) 신원확인을 통한 자동저장과 자동호출

신원확인에 대해 권한이 인정되는 기관은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호출할 목적으로 신분증을 사용해서는 안된다(제15조 제1항 제1문). 그러나 경찰청, 연방과 주의 경찰서, 세관, 주의 탈세조사기관은 해당 업무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호출할 수 있으며, 이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정보는 국경검사, 형사집행 내지는 공공안전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한 수배 내지는 거주지 확인, 경찰의 감시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세관감독을 위한 목적으로 저장된 정

보를 의미한다(제15조 제1항 각목). 이러한 이유로 개인정보를 호출한 경우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정보의 열람은 저장되지 않는다(제15조 제2항).

#### 3) 신원확인을 위한 차단암호, 차단징표, 일련번호의 사용

신원확인을 위하여 일련번호, 차단암호, 차단징표를 사용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권한 있는 기관의 도움을 받아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호출하거나 정보들을 연결시킬 수 있다(제16조 제1문).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신분증관청이 당해 관청이 가지고 있는 정보 중 개인정보를 호출하고자 하는 경우 경찰청, 연방과 주의 경찰서, 주의 관세청 및 세무서에서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분실되었거나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혐의가 있는 신분증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의 일련번호를 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련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제16조 제2문 각 호).

#### 4) 칩카드에 저장된 정보를 이용한 신원조사

신분증의 칩카드에 저장된 정보는 경찰범죄청, 관세청, 주의 세무서, 신분증관청, 여권청, 거주자신고청이 신분증의 진위 내지는 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제17조 제3문), 신분증소유자의 신원조사 내지는 문서의 진위확인을 위해서만 사용되고(제17조 제1문), 신원확인이 끝난 경우에 호출된 정보는 지체 없이 삭제되어야 한다(제17조 제4문). 또한 신원확인이나 문서의 진위확인을 위하여

개방된 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제17조 제2문).

### 5) 전자신원증명

16세 이상의 신분증소유자는 공공부문 혹은 비공공부문에 있어서 자신의 신원을 전자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다(제18조 제1항 제1문). 전자신원증명은 신분증의 전자칩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전달함으로서 이루어지며, 각각의 기술적 장소에 정보보호 및 정보안전성, 특히 정보의 신뢰성과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제18조 제2항 제1문). 소셜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암호절차를 거쳐야 하며(제18조 제2항 제2문), 이러한 전자신원증명은 신분증소유자 이외의 자는 사용할 수 없다(제18조 제2항 제3문). 신분증의 전자신원증명 기능이 잠겨져 있는지 및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신분증의 차단징표와 유효성에 대한 보고가 항시 전달되어야 한다(제18조 제3항 제1문). 이때 그러한 전달에는 성명, 박사학위, 생년월일, 출생지, 주소, 서류형식, 공공문서 및 카드 특유의 표지, 독일연방을 나타내는 'D'마크, 특정연령에 도달하였는지 여부, 거주지가 확인된 장소와 일치하는지 여부, 종교상의 이름, 예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 제3항 제2문 각 호).

이와 같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정보제공자는 신분증소유자에게 정보와 관련하여 유효한 허가증을 전달하여야 한다(제18조 제4항 제1문). 또한 허가증의 정보 중 서비스제공자의 이름, 주소, 이메일주소, 신분증의 차단징표와 유효성에 관하여 전달되어야 하는 사항(제18조 제3항 제2문), 정보전달의 목적, 서비스제공자가 정보보호규정을 이해하였는지에 대한 감독관청의 증명, 허가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표시하여야 하며(제18조 제4항 제2문 각호), 그 이후에 신분증소유자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제18조 제4항 제1문). 이상의 정보전달은 허가증에 언급된 정보에 한정되며, 신분증소유자는 개개 경우에 해당 범위 내에서의 전달도 배제시킬 수 있다(제18조 제5항).

### 6) 전자신원증명과 관련한 저장

차단징표는 차단리스트(제10조 제4항 제1문)에 있는 분실된 신분증의 경우와 서비스제공자가 신분증이 차단리스트에 있는지 여부를 임시로 평가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저장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평가가 완료된 후 해당 정보는 자체 없이 삭제되어야 한다(제19조 제1항). 차단암호의 저장은 신분증등록센터<sup>15)</sup>에서만 할 수 있으며(제19조 제2항), 모든 차단암



15) 신분증등록센터는 신분증법 제23조에 의하여 신분증등록청이 운영하며, 신분증의 발급과 신분증의 진위확인, 신분증소유자 혹은 신분증이 발급된 자의 신원확인서비스를 제공한다.

## 맞춤형 법제정보

호와 차단징표를 중앙의 통제기관에 포괄적으로 저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제19조 제3항). 전자신원증명의 실행범위에서 기술적인 이유로 혹은 차단리스트와의 조정을 위해 서비스제공자에게 전달되는 정보는 전달기간 동안에만 저장되어야 하나, 제18조 제3항 제1문에 의한 정보의 가공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제19조 제4항).

### 7) 공공부문 및 비공공부문에서의 사용

신분증소유자는 공공부문 혹은 비공공부문<sup>16)</sup>에서 신원증명 및 신분증명서로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다(제20조 제1항). 신분증은 전자신원증명 외에 공공부문 혹은 비공공부문에서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오거나, 자동으로 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제20조 제2항). 일련번호, 해제번호, 차단암호는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오거나 정보를 결합시키기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안되나, 서비스제공자가 전자신원증명 기능이 잠겨져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단징표와 비교하기 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20조 제3항).

### 4. 권한, 전자서명

#### 1) 서비스제공자의 권한인정

서비스제공자의 업무나 영업목적이 위법하지 않고, 상업적 전달을 위해 정보를 전달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권한범위를 넘어서서 정보를 전달할 것이라는 근거가 없으며, 신청 당사자인 서비스제공자가 기술된 목적을 위하여 정보의 전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법규명령 제34조 제7호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보호와 정보안전성에 대한 요건이 완비되어 있으며, 권한을 남용할 것이라는 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제21조 제2항 각호), 그의 업무나 영업목적상 필요한 정보를 신분증소유자에게 전자신원증명의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제21조 제1항 제1문). 이때 서비스제공자는 제18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를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하며(제21조 제1항 제3문), 당해



16) 전자신원증명은 예를 들면 온라인 습과 같은 비공공부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습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지불과 발송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성명, 주소를 신분증의 전자신원증명 기능을 사용하여 전달할 수 있다. 온라인 판매자는 허가증을 구매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허가증에는 제공자에 관한 표시, 허가증의 유효성에 관한 표시, 구매자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구매자는 6자리의 Pin 번호(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정보증개에 동의하게 되고,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증개에 있어서 개별정보를 제외시킬 수 있다. 구매자의 신분증에 삽입되어 있는 Chip카드에서 온라인 판매자의 허가증이 심사되고, 구매자가 공개를 허용한 정보는 암호화된 방식으로 판매자에게 전송된다. 온라인 판매자의 시스템에서 구매자의 신분증이 유효한지, 잠겨져 있지는 않은지가 다시 평가된다. 이러한 절차를 거려 온라인 판매자는 구매자의 정보를 수령하게 되고 통상 이러한 정보는 한 번 더 보여지게 되며, 구매자는 지금까지처럼 '구매완료'라는 버튼을 눌러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며, 이로서 구매계약이 완료된다: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Personalausweisportale, broschuere 5 Aufl., 2010 im www.personalausweisportal.de.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허가기관에 자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제21조 제4항).

서비스제공자는 신분증 소유자에게 정보제공을 요구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의해 인정된 허가증을 구비하여야 하며(제21조 제1항 제1문 및 제2문 전단), 관할관청은 서비스제공자가 언제든지 공개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가증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제21조 제1항 제2문). 서비스제공자의 권한인정은 최대 3년의 기간 내에서 기한부로 인정된다(제21조 제3항 제1문). 서비스제공자는 허가증의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인정받으며, 허가증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허가증을 사용할 수 있다(제21조 제3항 제2문). 권한에 대한 허가에 있어서는 부관이 부쳐질 수 있으며, 재신청도 가능하다(제21조 제3항 제3문).

## 2) 서비스제공자의 권한상실

권한인정에 대한 서비스제공자의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신고사항이 미비한 경우에 그러한 권한은 취소되고(제21조 제5항 제1문), 동일한 범위 내에서 권리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아야 하는 경우에 그러한 권리인정은 무효이다(제21조 제5항 제2문). 서비스제공

자가 허가증사용권한 내의 개인정보를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거나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관할 정보보호감독청이 권한에 대한 취소나 무효를 요구하는 경우에 권한은 취소되거나 무효가 된다(제21조 제5항 제3문). 권한의 취소나 무효가 공시되면 서비스제공자는 더 이상 허가증을 사용하지 못하며, 즉각적인 효력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sup>17)</sup>에는 준용되지 않는다(제21조 제6항).

## 3) 전자서명

신분증은 서명제조기<sup>18)</sup>로써 배제되며, 서명법의 규정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제22조).

## 5. 신분증등록센터, 저장지침

### 1) 신분증등록센터

신분증관청은 신분증법의 실행, 특히 신분증의 발급과 진위확인 및 신원증명을 위하여 신분증등록센터를 운영한다(제23조 제1항 및 제2항). 신분증등록센터는 사진, 신분증소유자의 서명날인, 절차에 따른 변경사항의 기입 이외에 성명, 박사학위, 생년월일, 출생지, 신장, 눈



17) 신분증법 제30조에 의하면 출국금지에 관한 규정(제6조 제7항), 권리의 상실(제21조 제5항), 권리의 폐지(제29조 제1항), 신분증의 보안조치(제29조 제2항)에 관한 항고소송과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효과가 인정된다.

18) ‘sichere Signaturerstellungseinheit’(서명제조기)란 서명법(Signaturgesetzes) 제2조 제10에 의하여 서명법 제17조 혹은 제23조에 의한 요건 및 그와 관련된 제24조에 의한 법규명령의 규정에 맞고, 유효한 전자서명을 확정하는 서명암호의 사용과 저장을 위한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를 의미한다.

## 맞춤형 법제정보

의 색깔, 주소, 국적, 법정대리인의 성명, 출생년월일, 서명날인, 일련번호, 차단암호, 유효기간, 발급청, 출국금지에 관한 사항(제6조 제7항), 독일 내의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국적법 제29조 및 제4조 제3항) 내지는 외국인이 일정한 요건하에 독일국적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표시(국적법 제29조 및 국적법 제40조의 b), 전자신원증명의 삽입여부 혹은 신분증이 차단리스트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종교상의 이름, 예명, 관할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신분증관청에 관한 증명(제8조 제4항 제2문)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제23조 제3항).

신분증관청은 신분증과 관련된 정보는 최소새로운 신분증이 발급된 때부터 최대 신분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5년까지 저장하고, 그 이후에는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제23조 제4항). 외국에 있는 영사관이 신분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30년으로 산정된다(제23조 제4항 제2문 및 제7조 제2항).

### 2) 신분증등록센터에 저장된 정보의 사용

신분증등록청은 동 법, 다른 법 혹은 법규명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조사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제24조 제1항).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습득할 권한이 있고, 그러한 정보 없이는 일반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기관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 업

무방식상 혹은 당사자에게 과도한 지불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정보습득을 포기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해 기관은 신분증등록센터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신분증등록센터는 정보를 요청기관에 전달할 수 있다(제24조 제2항). 이때 신분증등록센터는 중개방식<sup>19)</sup>으로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제25조 제1항). 요청기관이 이상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책임은 요청기관에 있으며(제24조 제3항 제1문), 정보전달 요청은 기관장으로부터 정보전달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공무원만이 할 수 있다(제24조 제3항 제2문). 또한 요청기관은 요청의 원인, 전달받은 정보의 출처를 문서로 정리하여야 한다(제24조 제3항 제3문).

경찰청, 공안청, 주(州)세무서, 세관은 형사소송 및 교통질서 위반에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는 신분증 관청에 접근할 수 없고, 자체하는 경우 조사목적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화 절차에 따라 사진을 호출할 수 있다(제25조 제2항). 사진을 호출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각 주법에 따른다(제25조 제2항 제2문). 이러한 내용은 호출권한을 감독할 수 있는 관계기관에 의하여 문서로 기록되어야 하며(제25조 제2항 제4문), 당해 기록에는 사진이 호출된 사람의 성명, 출생지, 호출날짜와 시간, 호출기관의 표시, 호출자와 호출지시자의 표시, 행위에 대한 표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제

19) 중개방식이란 정보를 변형 내지는 암호화하여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25조 제2항 각 호).

그 밖에 신분증의 신청, 발급, 교부는 이를 위하여 반드시 신고되어야 하는 사항이나 생물학적인 징표를 저장할 목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제26조 제1항 제1문). 신분증관청은 저장된 지문을 늦어도 신분증이 신청자에게 교부된 뒤에는 삭제하여야 한다(제26조 제2항). 중앙에 일련번호가 붙은 채 저장된 정보는 신분증 제작자가 신분증의 소재지를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제26조 제3항 제1문), 신분증제작자는 신분증 제작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고, 일시적으로만 필요한 그 밖의 정보를 저장할 수 없다(제26조 제3항 제2문). 또한 신분증법 제26조 제4항은 연방전체에 걸친 생물학적 징표의 정보은행 설립을 부정하고 있다.

### III. 주민등록증 및 전자신원증명에 관한 법규명령

#### 1. 일반규정

##### 1) 연방정보기술안전청의 기술적 지침

기술상황에 따라 사진과 지문의 저장, 전자저장매체와 처리매체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접근보호에 대한 기술상의 요구(제2조 제1호 각 목)와, 사진과 지문의 기록 및 품질보장, 신분증관청으로부터 신분증제작자에게 전송되는 전체적인 신분증신청정보, 전자신원증명, 신분증소유자가 전자신원증명의 비밀번호, 차단, 차단해제 및 차단징표와 차단암호를 입력할 때에 필요로 하는 기술시스템과 통신수단에 대한 기술적이고 조직적인 요구(제2조 제2호 각 목)가 충족되어야 한다.<sup>20)</sup>

##### 2) 허가증

신분증관청, 신분증제작자, 서비스제공자 및 연방정보보호법 제11조에 따른 위임자가 필수적 혹은 선택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장치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으며,<sup>21)</sup> 허가증의 구체적 내용과 방식은 연방기술정보안전청의 기술지침에 따른다.

연번	장치구성요소	의무/ 선택
1	신분증카드에 대한 전자저장매체와 전자기공매체(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신분증제작자의 의무
2	지문인식기	기계제공자의 의무 신분증제작자의 의무 신분증관청의 의무



20) 기술상황은 연방정보기술안전청의 지침에 따른다. 이러한 지침은 부록 4에 규정되어 있으며, 각각 연방전자신문에 공표된다(제2조 2문).

21) 신분증 및 전자신원증명에 관한 법규명령 제3조 제1항 제1문 및 동 명령 부록 5.

## 맞춤형 법제정보

연번	장치구성요소	의무/ 선택
3	사진과 지문의 수집과 품질보장을 위한 소프트웨어	신분증제작자의 의무 신분증관청의 의무
4	제3자가 신분증관청에 사진을 안전하게 전달하는데에 필 요한 시스템	제7조 제1항 제2문 1호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사진을 수집 하여야 하는 신분증관청의 의무
5	사진수집을 위한 수집소	제7조 제1항 제2문 2호에 의하여 사진을 스스로 수집하여 야 하는 신분증관청의 의무
6	신분증관청이 신분증제작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필 요한 모듈	신분증제작자의 의무 신분증관청의 의무
7	신청정보의 신뢰성과 신빙성을 보장하기 위한 모듈	신분증제작자의 의무 신분증관청의 의무
8	신분증관청에서 변경서비스와 시각화서비스를 위한 변경모듈과 시각화모듈	신분증제작자의 의무 신분증관청의 의무
9	신분증법 제18조와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카드인식기	인식기 제공자에 의한 선택적 실행 신분증소유자에게 허가받은 소프트웨어를 투입하는 자의 추천
10	Bürgerclient <sup>22)</sup>	소프트웨어 제공자에 의한 선택적 실행 신분증소유자에게 허가받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자의 추천
11	서비스제공자 혹은 그의 수임인(eID-Server)이 전자신원증 명을 실행하는 데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서비스제공자 혹은 그의 수임인의 의무

### 3) 기록의무

신분증관청은 전자신원증명의 목적을 위하여 신청자와 신원증명부서 간에 이루어진 신분증소유자의 의사표시, 신분증의 교부일시, 신분증관청이 비밀번호, 차단해제번호, 차단암호를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 발송일시, 전자신원증명 차단일시를 포함한 차단사실, 잠근 신

분증관청, 전자신원증명의 삽입일시를 포함한 삽입사실, 삽입한 신분증관청, 신분증소유자의 차단신청, 차단리스트운영자에 대한 차단징표의 전달, 신청 및 전달일시, 신분증소유자의 차단해제 신청, 차단리스트운영자에 전달, 신청 및 전달일시를 문서로 기록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각 호).



22) 'Bürgerclient'는 시민용소프트웨어로 카드 단말기와 칩카드 및 원거리 기기와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하는 장치이다. 이 소프트웨어로 전자서명 발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작업도 가능하며, 전자신분증소유자는 이 프로그램을 안전한 다운로드나 기타 CD를 통해 자신의 PC에 설치할 수 있다.

차단긴급통화센터<sup>23)</sup>는 전자신원증명의 목적을 위하여 신분증소유자의 차단신청, 차단리스트운영자에 대한 차단징표의 전달, 신청 및 차단일시를 기록하여야 한다(제4조 제2항).

차단리스트운영자는 전자신원증명의 차단과 관련하여 차단징표를 포함한 차단신청의 접수, 접수일시, 일반적인 차단징표의 리스트 등록, 차단일시, 차단리스트 작성을 위한 문의, 문의일시, 리스트의 실제 호출, 호출일시를 기록하여야 한다(제4조 제3항 제1호 각 목). 또한 전자신원증명의 차단해제와 관련하여 차단정보를 포함한 차단해제신청의 접수, 접수일시, 차단리스트에 기인한 일반적인 보안징표의 제거, 제거일시, 호출을 위한 보안리스트의 제공, 제공일시, 실제호출, 호출일시를 기록하여야 한다(제4조 제3항 제2호 각 목).

#### 4) 저장과 삭제

신분증관청은 신분증법 제23조 제4항에 준용하여 개인정보는 최소 발급한 때부터 최대 유효기관 경과 후 5년 이내에 삭제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차단긴급통화센터는 개인관련 정보의 사용 후 1년 내에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제5조 제2항). 또한 보안리스트 운영자의 경우 보안키, 보안정보는 조회리스트(Referenzlist)에 의하여 등록된 후 10년, 보안리스트의 개선

(Aktualisierung)은 전자신원증명의 보안과 보안해제가 증명된 후 저장된 후 10년, 일반적인 차단징표는 차단리스트 운영자가 차단키를 저장한 후, 혹은 신분증관청이 차단을 해제한 후 10년 내에 삭제하여야 한다(제5조 제3항). 신분증제작자는 제작과정에서 획득하거나 생산되었고, 신청자에게 귀속되는 정보를 최대 보안리스트 운영자가 보안정보와 보안키를 수령하고, 주민등록청이 보안암호를 받을 때까지 저장할 수 있으나, 당해 정보는 안전하게 삭제되어야 한다(제5조 제4항 제1문). 신분증제작자는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제작된 신분증의 차단징표를 리스트에 등록하여야 하며(제5조 제4항 제2문), 당해 리스트에 등록된 차단징표는 등록 후 10년 내에 삭제되어야 한다(제5조 제4항 제3문).

## 2. 신분증신청정보의 전달

### 1) 사진, 지문의 수집

신분증의 신청에 있어서 신청자는 세로 4.5cm, 가로 3.5cm의 테두리 없는 최근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제1문). 신분증관청이 기술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방정보보호기술적의 기술적 지침에 따른 전달방식을 갖추고 있다면 제3자가 사진을 암호화한 뒤 서명하여 신분증관청에 전자적으

23) 독일은 구청(Bürgeramt)에 4시간 연결 가능한 긴급통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긴급통화센터의 번호는 0180-1-33 33 33이며, 일반전화의 경우 1분당 3.9Cent가 부과되고, 핸드폰의 경우 1분당 최대 42Cent가 부과되며, 외국에서도 통화가 가능하다.

## 맞춤형 법제정보

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고(제7조 제1항 제2문 제1호), 신분증관청에서 사진을 수집할 수도 있다(제7조 제1항 제2문 제2호). 신분증관청은 기술적, 조직적으로 적합한 조치를 통하여 사진과 지문의 필수요구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제7조 제2항 제1문), 자격이 인정되는 품질보장 소프트웨어로 그러한 조치를 검사하고, 신분증 양식에 맞추어 저장하여야 한다(제7조 제2항 제2문). 지문의 경우에는 권한이 인정된 하드웨어에도 저장되어야 한다(제7조 제2항 제3문).

사진은 모자나 두건, 안경이나 썬글라스 등을 벗은 상태에서 정면을 보고 찍은 것이어야 하며(제7조 제3항 제1문)<sup>24)</sup>, 신분증관청은 일시적이지 않은 의학적 이유에 근거하여, 이러한 지침에 대해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제7조 제3항 제3문). 또한 모자나 두건에 대해서도 종교적인 이유에 근거하여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제7조 제3항 제4문).

### 2) 전달

신분증관청은 모든 신청자료를 기록하고 난 후, 자료들을 디지털 레코드에 모아서 주민등록증 제작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제1문). 이때 자료전달에는 지문을 뜯 경우 지문의 품질상태, 사진의 품질상태, 품질보장소프트웨어의 버전번호, 품질보장소프트웨어의

목표값, ISO-기준 19794에 따라 저장된 생물학적 자료의 기술적 특성, 관청식별번호, 주민증 신청의 날짜소인이 포함되어야 한다(제8조 제1항 제2문 각호).

자료전달은 연방과 주의 정보네트워크 혹은 소셜네트워크를 통과하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달은 정보중개의 형태로 이루어진다(제8조 제1항 제3문). 연방과 주의 정보네트워크 간에 정보전달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위하여 2009년 8월 10일에 시행된 연방과 주의 정보네트워크의 연결에 관한 법 제3조에 따라 늦어도 2015년 1월 1일부터 코어망이 이용되고(제8조 제1항 제4문), 전달된 정보는 기술상황에 맞추어 전자서명 및 전자차단 조치가 이루어진다(제8조 제1항 제5문).

신분증제작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정보전달프로토콜 OSCI-Transport의 기반 위에서 정보포켓 XhD가 사용되며(제8조 제3항 제1문), 정보전달은 중개를 거쳐서 이루어진다(제8조 제3항 제2문). 특히 정보의 신뢰성과 완전성 및 전달장소의 확정성을 보증하는 정보보호 내지 정보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된 장소는 각각의 기술적 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제8조 제3항 제3문), 소셜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합한 차단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제8조 제3항 제4문).

24) 신분증에 삽입되는 사진의 기준에 대해서는 부록 3 제2장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 3. 신분증제작

#### 1) 신청정보

신분증제작자는 신청정보를 빠짐없이 그리고 잘못된 것 없이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신분증 관청에 전자형태로 자체 없이 정보를 받았음을 알려야 한다(제10조 제1문). 이때 신분증제작자는 정보를 전달한 신분증관청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제10조 제3문). 신분증제작자는 유효하지 않거나 잘못된 서명 내지는 오류가 있는 재가공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술적이고 조직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0조 제2문).

#### 2) 개인관련 정보의 저장과 보안

전자신분증의 저장 내지는 가공매체에 저장된 개인관련 정보 일체는 권한 없는 침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제14조 제1항 제1문), 특히 개인관련정보를 전달하기에 앞서 비밀번호, 로그인번호 혹은 MRZ의 정보가 입력되어야 하고, 정당한 자격에 관한 접근권이 증명되어야 하며, 전자 저장매체와 가공매체 사이의 모든 개인관련 정보 및 정당한 자격의 소유자가 암호화되어 전달되어야 한다(제14조 제1항 제2

문 각호). 또한 신분증은 신원확인에 관한 권한이 인정되고, 공신력 있는 허가증을 사용하는 관청 내지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주민등록증 소유자가 비밀번호를 입력한 경우에 권한이 인정되는 서비스제공자만이 독점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제14조 제2항).

#### 3) 신분증관청에 대한 정지암호의 전달과 전송

신분증제작자는 신분증명부의 저장을 위해 암호화 및 서명화된 정지암호를 안전하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정보변형포맷 XhD에서 신분증 관청에 전달하여야 한다(제15조 제1항). 이때 신분증관청은 신분증제작자에게 정지암호를 받았음을 자체 없이 알려야 하고(제15조 제2항 제1문), 신분증제작자가 정지암호를 전달받은 때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일이 지난 후에도 확인을 받지 못하였다면, 신분증관청에 이에 관하여 문의하여야 한다(15조 제2항 제2문).

#### 4) 차단리스트운영자에 대한 보안키와 차단키의 전달

신분증제작자는 암호화되고 기호화된 신분증의 보안키<sup>25)</sup>와 차단키<sup>26)</sup>를 신분증관청에 전



25) 법규명령 제1조 제2항에 의하면 보안키(Sperrschlüssel)란 차단된 전자신원증명의 일반적인 차단정표를 산출하는 일의적인 카드식별 징표로, 신분증제작자에 의해 산출되고, 차단리스트운영자에 의해 전달되며, 영구적으로 조회리스트에 저장된다.

26) 법규명령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차단키(Sperrsumme)란 신분증법 제2조 제6항에 따른 차단암호, 신분증소유자의 성명과 생일로부터 산출된 일의적인 징표를 의미하며, 이는 차단긴급통화센터나 신분증관청이 전자신원증명이 차단되었다는 사실을 차단리스트운영자에게 전달하는 데에 사용된다. 차단키를 가지고 차단리스트운영자는 조회리스트를 참조하여 차단된 전자신원증명의 보안키를 산출한다.

## 맞춤형 법제정보

송하기 전에 차단리스트운영자에게 안전하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제16조 제1문), 정보전달에 관한 제8조 제1항 제3문 내지 제5문이 준용된다. 이때 차단리스트운영자는 주민중제작자에게 정보를 받았음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제16조 제3문), 주민중제작자가 차단숫자와 차단키를 전달받은 후 공휴일을 제외한 2일 이내에 확인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는 차단리스트운영자에게 문의하여야 한다(제16조 제4문).

### 5) 비밀번호, 해제번호, 차단암호의 전송

신분증제작자는 신분증소유자가 신분증을 교부받기 전에 비밀번호, 해제번호, 차단암호의 우편수령에 대해 문서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하여(제17조 제7항 제1문), 그것을 신청자에게 신분증의 신분증에 적혀 있는 주소에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제17조 제1항 제1문 및 제4항 제1문),<sup>27)</sup> 발송인주소는 그것을 작성한 주민등록증관청의 우편주소로 한다(제17조 제1항 제1문). 이때 신분증과 비밀번호는 하나

의 우편으로 발송되어서는 안되며(제17조 제2항), 이를 신분증교부청으로 보낸 경우에(신분증법 제13조 제3문)는 제3자가 비밀번호, 차단암호를 알지 못하도록 보호되어야 한다(제17조 제3항). 신청자가 여러 개의 집에 거주하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sup>28)</sup>에는 편지를 신분증교부청이나 신청자에게 개인적으로 발송할 수 있으며(제17조 제4항 제1문), 반송된 편지의 경우에는 신분증관청이 신청자에게 편지를 전달하여야 한다(제17조 제4항 제2문).

신분증제작자는 신청당시 적어도 15세 9개월이 된 신청자에 대해 우편을 발송하여야 하고(제17조 제5항),<sup>29)</sup> 신청자가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면 그는 새 신분증을 신청할 수 있다(제17조 제6항 제1문). 이때 새 신분증이 들어 있는 우편물은 신분증관청에 보내져서, 신청자에게 전달된다(제17조 제6항 제2문).

## 4. 교부

신청자가 전자신원증명의 사용을 원치 않는



- 27) 일반적으로 독일에서 비밀번호는 Pin-Nummer, 해제번호는 PUK-Nummer라고 하며, 비밀번호를 3번 잘못 입력한 경우에 신분증의 전자신원증명이 차단되기 때문에, PUK-Nummer를 입력하여 차단을 해제하여야 한다.
- 28) 독일에서 거주자는 하나 혹은 여러 개의 집에서 거주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거주자동록법은 거주지 양식을 단일거주지 (alleinige Wohnung), 여러 개의 거주지 중 주거주지(HauptWohnung), 보조거주지(Nebenswohnung), 외국에서의 거주지(Wohnung im Ausland)로 구분한다.
- 29) 신분증법 제1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만 16세에 이르지 못한 자도 신청에 의하여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이때 발급되는 신분증은 동법 제3조의 임시신분증으로 동법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3개월간만 유효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만 15세 9개월이 된 청소년의 경우 신분증을 3개월간 임시신분증을 사용하고 나면, 정식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분증 사용을 위한 비밀번호, 해제번호, 차단암호를 신청할 때에 만 15세 9개월이 기준이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신분증관청은 전자신원증명을 배제시켜야 한다(제18조 제1항). 신청자가 제17조 제7항에 의하여 우편수령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신분증은 전자신원증명이 배제된 채로 교부되어야만 한다(제18조 제2항). 국외에 있는 신분증관청의 경우 신청자가 직접 신분증을 수령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분증을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제18조 제5항).

신분증소유자는 신분증에 저장되어 있는 판독가능한 개인정보를 언제든지 신분증관청으로부터 통지받을 수 있으며, 전자신원증명(제18조 제1항)과 신분증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제18조 제3항)의 판독은 공신력 있는 허가증이 첨부된 판독기계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제18조 제4항).

## 5. 정보변경

### 1) 주소변경

주소변경을 위하여 신분증관청은 새로운 주소와 신분증번호가 적혀 있는 스티커<sup>30)</sup>를 붙이고(제19조 제1항), 전자첩에 저장되어 있는 주소를 변경한다(제19조 제2항). 정보변경은 공신

력 있는 허가증을 통해 허가된 기계를 사용하여 이루어진다(제19조 제3항).

### 2) 비밀번호변경과 새입력

신분증소유자가 처음 발급된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 신분증관청은 신분증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제20조 제1항 제2문), 신분증소유자로 하여금 비밀번호를 새로 입력하게 할 수 있으며(제20조 제1항 제1문), 이를 위하여 공신력 있는 허가증이 발급된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제20조 제3항). 이때 신분증관청은 기술적이고 조직적인 조치를 통하여 신분증소유자 이외에 아무도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제20조 제1항 제3문).

신분증소유자는 비밀번호변경을 위해 기존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다(제20조 제2항).

### 3) 잘못된 비밀번호를 여러 번 입력한 경우

비밀번호를 2번 잘못 입력한 경우 기존의 접근번호<sup>31)</sup>를 입력하여야, 세 번째 입력을 할 수 있다(제21조 제1항). 비밀번호를 3번 잘못 입력하여 접근이 차단된 경우에는 신분증관청에서 비밀번호를 새롭게 입력할 수 있으며, 해제



30) 법규명령 부록 1.

31) 신분증법 제2조 제11호에 규정되어 있는 접근번호(Zugangsnummer)는 신분증 앞면 유효기간 옆에 6개의 숫자로 기입되어 있다.

# 맞춤형 법제정보

번호를 입력하여 전자신원증명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해제암호는 10번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제21조 제2항).

## 6. 전자신원증명의 사용

### 1) 사후삽입과 배제

관할 신분증발급청 내지 교부청은 전자신원증명을 삽입하기 전에 주민증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하고(제22조 제1항 제1문), 전자신원증명을 배제하는 경우 배제사실을 신분증명부에 저장하여야 한다(제22조 제1항 제2문). 이때 발급청이 저장을 하였다면, 그것을 관할 교부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교부청은 신분증명부에 배제사실을 저장하여야 한다(제22조 제1항 제3문 및 제4문). 이미 전자신원증명이 배제된 신분증에 대해 전자신원증명을 삽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분증관청은 삽입 전에 신분증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고(제22조 제2항 제1문), 신분증명부에서 배제사실을 삭제하여야 한다(제22조 제2항 제2문). 이때 신분증소유자가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신분증관청은 신분증소유자에게 신분증명부에 있는 차단암호를 통지하여야 한다(제22조 제2항

제4문). 전자신원증명의 배제와 사후삽입은 공신력 있는 허가증을 통해 자격이 인정된 기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제22조 제3항).

### 2) 신분증소유자의 사용요건

전자신원증명의 최초 사용에 앞서 신분증소유자는 편지로 우송된 최초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비밀번호를 새롭게 등록하고(제23조 제1항), 기술상황으로 인한 안전성 결함에 대한 적절한 방어조치를 포함한 정보기술시스템, 독일연방정보기술청으로부터 인증받은 판독기,<sup>32)</sup> 독일연방정보기술청으로부터 인증받은 전자신원증명을 위한 소프트웨어<sup>33)</sup>를 설치하여야 한다(제23조 제2항 각 호).

## 7. 전자신원증명의 차단과 차단해제

### 1) 전자신원증명의 차단

신분증이 분실된 경우 신분증소유자는 관할 신분증기관, 발급청, 차단긴급통화센터를 거쳐 지체 없이 신분증의 전자신원증명을 차단시켜야 한다(제25조 제1항 제1문). 신분증소유자는 관할 신분증관청이나 발급청을 통해 차단을 한 경우에는 발급청에서, 차단긴급통화센터를 통



- 32) 판독기는 전자칩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읽고, 이것을 서비스제공자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하며, 신분증로고가 부착되어 있다. 판독기는 판독기 자체의 자판을 통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스탠다드 판독기와 컴포트판독기, 컴퓨터자판이나 컴퓨터모니터의 터치스크린을 통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베이시스판독기가 있다. 서명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컴포트판독기가 있어야 한다.
- 33) 예컨대 ‘AusweieApp’와 같은 소프트웨어는 신분증과 컴퓨터를 연결시키고, 판독기를 거쳐 암호화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 준다. ‘AusweisApp’는 [www.ausweisapp.bund.de](http://www.ausweisapp.bund.de)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해 한 경우에는 해당 센터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제25조 제3항 제3문).

전자신원증명을 차단한 기관은 자체 없이 차단키를 산출하고, 그것을 즉시 차단리스트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25조 제2항 제1문), 관할 신분증기관이 전자신원증명을 차단하였다면 그러한 사실을 발급청에 통지하고(제25조 제2항 제2문), 발급청은 차단사실을 신분증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제25조 제2항 제3문).

차단리스트운영자는 일반적인 차단징표를 차단리스트에 자체 없이 기입하고, 신분증소유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제25조 제3항 제1문). 또한 신분증소유자가 일반적인 차단리스트에 전자신원증명이 기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이고 조직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제27조 제1문).

## 2) 전자신원증명의 차단해제

신분증소유자는 신분증발급청이나 관할 신분증관청에 직접 출석하여 차단된 전자신원증명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제26조 제1항 제1문 및 제3문). 관할 신분증관청이 차단을 해제한 경우에 당해 관청은 신분증발급기관에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고(제26조 제2항 제1문), 차단리스트운영자에게 차단키를 전송하여야 하며, 신분증명부에서 차단리스트의 기입을 삭제하여야 한다(제26조 제2항 제2문). 신분증발급기관은 차단리스트에서 일반적인 차단징표를 삭제하고, 신분증소유자에게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제26조 제3항).

## 8. 허가증의 신청

### 1) 신청

허가증의 신청이 신분증법 제21조 제2항 제1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당해 신청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제28조 제1항). 먼저 자연인의 경우 성명, 출생년월일, 출생일시, 주거주지의 주소가 있어야 하고, 법인의 경우 법인의 이름, 주소, 범적형태, 대리권수여여부가 기재되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 혹은 설립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제28조 제1항 제1호). 법인과 자연인 모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와 국외에 거주지나 소재지를 가지고 있는 신청자는 연락 가능한 주소를 포함한 국자식별번호를, 독일에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지점의 해당 정보를 기입한다(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또한 서비스제공자와 그의 업무영역에 대한 설명,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당해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설명(제28조 제1항 제4호), 인터넷 사이트, 자판기 위치, 정보보호설명에 대한 참조를 포함한 서비스제공에 관한 설명(제28조 제1항 제5호), 권한이 필요한 정보조사에 대한 충분한 설명(제28조 제1항 제6호), 신분증법 제18조 제3항에 의한 정보법주(제28조 제1항 제7호), 연방정보보호법 제4조의 f에 의한 정보보호업무 수임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및 관할 정보보호감독청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제28조 제1

## 맞춤형 법제정보

항 제8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그 밖에 신청자가 전자신원증명의 실행을 위해 연방정보보호법 제11조에 의한 업무위임인을 두고 있는지 여부와 업무위임인이 있다면 그에 대한 제1호의 정보를 기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며,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지체 없이 추가로 그것을 기입하여야 한다(제28조 제1항 제9호).

신청자는 서명날인 혹은 전자서명을 하여야 하고(제28조 제2항), 직접 출석하거나 대리인이 정부기관으로부터 발행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제출하거나, 전자서명 내지는 전자신원증명을 통해 신원이 확인되어야 한다(제29조 제2항).

### 2) 정보보호 및 정보안전성에 대한 요구

정보수집이 신분증 소유자 혹은 제3자를 위하여 신분증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공급하거나 판독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고, 신청자의 거주지나 소재지가 속해 있는 국가가 개인정보의 가공에 있어서 자연인의 보호 및 침해받지 않는 정보절차에 관한 유럽연합의 법적 지침<sup>34)</sup>에 따른 정보보호수준을 보장하지 않으며, 서비스제공자의 전자신원증명에 관한 업무가 연방정보보호법 제11조에 의한 유효한 위임

절차 없이 위임되어 있고, 서비스제공자가 연방정보보호청의 기술지침을 충족하지 못한 위임자에게 업무를 위임시킨 경우에 신분증법 제2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보아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제29조 제1항).

신분증법 제21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정보보호의 요건은 기술상황에 따라 서비스제공자가 충족하여야 하며, 업무의 위임은 투입된 시스템장비의 방식과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제29조 제2항 제1문). 또한 업무의 위임은 서비스제공자가 허가증 사용을 위해 충족하여야 하는 기술요건에 대한 지침에서 확정되며, 그러한 지침은 전자관보에 공보된 경우에 한해 유효성이 인정된다(제29조 제2항 제2문). 비공공부문의 서비스제공자에게 권한을 인정하기 전에 관할정보보호관청으로부터 권한오용의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제29조 제3항).

### 3) 허가증의 공공리스트

허가증 담당기관은 모든 유효한 허가증에 관한 리스트를 공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신분증법 제18조 제4항 제2문 각호에 대한 언급과 허가의 유효기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는 전자신원증명의 목적을 위해



34) Richtlinie 95/46/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4. Oktober 1995 zum Schutz natürlicher Personen bei der Verarbeitung personenbezogener Daten und freien Datenverkehr(ABl.L 281 vom 23. 11. 1995, S. 31).

서만 사용될 수 있다(제30조).

## 9. 허가증의 교부

허가증발행인은 제31조 각호의 규정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허가증을 발급하기 전에 실제로 허가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제33조 제1문). 발행인은 허가에 따른 의무, 제한사항, 부관 등을 고려하고, 소유자나 허가의 유효성 내지 범위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허가증의 발급 전에 그러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제33조 제2문). 허가기관은 권한을 인정할 때에 허가증의 유효기간을 함께 산정하여야 하며(제34조), 허가증발행인은 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제35조 제1항). 허가증발행인은 새로운 잠금리스트가 호출될 때까지만 일반 잠금리스트를 저장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 잠금리스트에서 산출된 정보는 잠금징표를 가지고 업무 특유의 잠금리스트를 작성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제35조 제3항).

신분증법 제2조 제4항 제3문의 공신력 있는 허가증은 신원확인에 대해 권한이 인정되는 관청에 대해서만 발급된다(제36조 제1항). 또한 내무성장관은 어떠한 공신력 있는 허가증이 신원확인을 위한 어느 관청에 발급되었는지를 연방 전자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제36조 제2항). 이때 공신력 있는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정보기술보호청이 결정하며(제36조 제3항), 허가증의 발급일시, 허가의 내용, 수령인을 기록하여야 한다(제36조 제4항).

## IV. 신분증과 전자신원증명 수수료에 관한 법규명령

### 1. 신분증 수수료

신분증 발급을 위해 신분증의 소유자가 신청 당시 만 24세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22.80 유로, 만 24세 이상부터는 28.80 유로의 수수료를 지불한다(제1조 제1항). 임시신분증의 발급을 위해서는 10유로를 지불하여야 하며, 정식 신분증과 임시신분증을 함께 신청한 경우에는 신분증수수료 이외에 임시신분증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하여야 한다(제1조 제2항). 신청자에 의하여 행정업무가 업무시간 이외에 이루어졌거나, 관할이 아닌 관청에서 행해진 경우에는 13유로를 더 지불하여야 하며(제1조 제3항), 외국에 있는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신분증이 발급된 경우에는 30유로의 수수료가 추가된다(제1조 제4항). 그 밖에 주소변경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징수되지 않는다(제1조 제5항). 극빈자의 경우 수수료가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제1조 제6항).

### 2. 전자신원증명 수수료

전자신원증명의 삽입을 위해서는 6유로의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제2조 제1항 제1문).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새로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유로의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나, 전자신원증명을 삽입할 때에 비밀번호를 입력

## 맞춤형 법제정보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제2조 제2항). 전자신원증명의 해제를 위해서도 6유로의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며(제2조 제3항), 외국에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전자신원증명에 관한 이상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6유로의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하여야 한다(제2조 제5항). 그 밖에 만 16세에 이르러 최초로 혹은 그 밖에 신분증 발급시 전자신원증명을 삽입하는 경우, 전자신원증명의 차단, 전자첩에 저장되는 주소의 변경을 위해서는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제2조 제6항 각호).

### 3. 허가를 위한 수수료

허가증의 발급에 대해서는 102유로, 허가의 거부에 대해서는 80유로, 허가의 철회나 취소에 대해서는 115유로의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제3조 각호).

주민등록증을 도입하고자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신분증에 전자신원증명 기능이 추가된 독일의 새로운 신분증 제도를 살펴보았다.

독일의 전자신원증명은 2010년 11월부터 시행되어 6개월 동안 약 2,300만 명이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받았다. 독일은 신분증 발급시 전자신원증명 기능을 선택적으로 삽입하도록 하고 있고, 현실에서는 새로운 신분증을 신청할 때에 전자신원증명기능을 배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전자신원증명의 보안성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며, 한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결국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논의 이전에 전자신원증명기능의 삽입과 지문저장 등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독일의 제도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 V. 결론

한국의 경우 현재 주민등록증의 도용이나 위조를 방지하고, 전자정부의 실현을 위해 전자

### 이재경

(해외입법조사위원,  
독일 괴팅엔대학교 의료법연구소 연구원)